

인천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5. 6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-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- 위 치 : 서구 원창동 381-69, -70번지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-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 -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(변경없음)
 -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(변경)
 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 - 상업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	변 경				
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위 치	면 적(㎡)				위 치	면 적(㎡)	
Ⅲ-7	67,033.0	1	10,964.0		Ⅲ-7	67,030.5	1	10,964.0	
		2	11,738.0				2	11,738.0	
		3	6,416.0				3	15,367.5	
		4	8,954.0						
		5	7,171.0				5	7,171.0	
		6	7,121.0				6	7,121.0	
		7	6,956.0				7	6,956.0	
		8	7,713.0				8	7,713.0	

※ 서구 원창동 381-69, -70번지에 대한 획지분할 측량 결과값 반영 및 획지 합병

■ 상업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Ⅲ-7	3, 4 → 4	면적변경 및 획지합병	- 획지분할 측량에 따른 결과값 반영 - 건축규모 확장을 위한 획지합병

(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
5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

